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3. 7.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2. 2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9. 2. 25.
- 다. 상정일자 : 제22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9. 3. 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가. 제안이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등(안 제1조~제2조)
- 2)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3)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안 제4조)
- 4)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업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
(안 제5조~제8조)
- 5)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용대상 및 이용료

3. 검토보고 (최종의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진로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의 경우, 청소년 즉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로체험 시설 설치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는 규정과, 「**진로교육법**」 제18조에 근거하여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

청소년기본법	진로교육법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 또한, 안 제4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부터 제8조(지도·감독)에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진로체험기관의 자원 발굴·데이터베이스 구축·학교와의 연계와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협력 등의 진로교육 지원사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센터 조직 및 전문인력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그리고 사업의 이행여부 점검 등의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음.

- 특히나 이 사업은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교육청에서만 사무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2013. 5월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고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경비는 서울시교육청과 마포구가 각각 부담 <표 1> 하고 있음.

<표 1>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7	2018	2019	비고
예산액(시·구비)	239,614	320,000	322,500	위탁경비
시비	115,000	120,000	122,500	
구비	124,614	200,000	200,000	

-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운영(직영 4개, 위탁 21개) 중에 있으며, 서울시 타 자치구 유사 조례는 10개구에서 기 시행되고 있음. <별첨>

- 계속해서, 안 제9조(이용대상)부터 제10조(이용료)의 경우, 이용대상은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표 2> 과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주민으로 하고 이용료는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무료로 정하였음.

<표 2> 마포구 학교 현황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각종 학교	대학교	학력인정학교
52	22	14	9	2	2	3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할 것
2.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4.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 운영 계획이 있을 것

○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2015년 6월 「진로교육법」이 제정되고 학생들이 진로체험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개선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이어 2018년 자유학년제를 5개교 시범실시하고 2019년부터 14개교 전체 시행됨에 따라 진로체험기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자 직업체험을 지원·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로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역량을 배양하는 토대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